

2014년 국가직 형사소송법 출제 포인트					
출제 영역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비교	
1편 의의	형소법의 법원, 적용범위		㉠		
	형소법의 이념·구조				
2편 수사	수사 기본 이론	수사기관·피의자·자문위원			
		수사조건(합정수사 등)			
		수사단서(-고소 등)	㉠ 불심검문 ㉡ 고소 ㉢ 고소불가분의 원칙		
	임의수사 및 기술적 수사				
	대인 강제 처분	체포			
		구속			
		보호제도			
대물 강제 처분	압수·수색·검증 절차 및 처리	㉠ 압수·수색·검증 절차 및 처리			
	증거보전·증인신문				
수사 종결	통지·고지				
	불복(재정신청) 기소후 수사	㉠ 재정신청			
3편 기소	공소 일반(공소권남용)				
	공소 제기	기본원칙 및 방식	㉠ 공소장제출 ㉡ 예비적·택일적기제 ㉢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효과			
공소시효					
4편 공판	기초 지식	실체·절치면·이분론			
		소송조건·소송행위			
		소송서류·송달			
	소송 주체	법원	㉠ 관할(토지관할) ㉡ 기피신청 ㉢ [[재판장, 수임판사]]		
		검사			
		피고인	㉠ 무죄추정의 원칙 ㉡ 진술거부권		
		보조자(변호인)			
	심리 범위	공소장변경	㉠ 공소장변경제도		
		공소취소			
	공판 절차 진행	기본원칙	㉠ 공개주의		
		공판준비			
		공판정구성	㉠ 변호인의 출석 ㉡ [전문심리위원 지정·참여]		
		공판기일			
		증거조사	㉠ 증인신문 ㉡ 피해자의 지위강화 ㉢ 증인신문 ㉣ 간이공판절차		
	증거	서설(엄격한 증명)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 ㉢ 315조		
		증명력			
재판	종국재판	㉠ 변소판결 ㉡ 재판(판결·결정)			
	기판력	㉠ 기판력			
5편 상소 비상구제	상소	㉠ 통칙 ㉡ 각칙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항고, 준항고		
	비상구제절차(재심)				
6편 특별 집행	특별 절차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	㉠ [즉결심판 청구권자]		
		배상명령절차			
		소년형사절차			
집행 및 형사보상					



**출제경향 분석**

출제영역		문항수	총평 및 향후 수험전략	
1편	0	형사소송법의 기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b>1) 출제 유형별 분석</b> ① 순수한 조문(형소법·특별법)문제 : 8문제 ② 순수한 판례 문제 : 9문제 ③ 이론 문제 : 0문제 ④ 조문·판례 결합형 문제 : 13문제  <b>2) 출제 방식별 분석</b> ① 틀린 것 찾는 문제 : 26문제    ② 옳은 것 찾는 문제 : 4문제  <b>3) 문제 형식별 분석</b> ① 4지 선택형 문제 : 27문제    ② 박스형 문제 : 3문제 ③ 사례형 문제 : 0문제    ④ 사례+박스형 문제 : 0문제  <b>4) 출제 내용 분석</b> ① 조문만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비율은 대폭 축소 ② 판례의 출제비중이 현저히 증가 및 신판례를 반영하여 문제구성 ③ 이론적인 지문이 출제 ④ 공판절차편에 문제가 치중 ⑤ 전형적으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출제  <b>5) 총 평</b> ①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중(中) 정도로 평가된다. ② 기존에 전형적으로 출제되던 지문이 다수를 구성하여 기본강의를 충실히 따라왔던 수험생들은 쉽다고 느꼈을 것이다. ③ 판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판례정리가 필요한 시험이었다. ④ 기본강의를 충실히 이행한 수험생들은 95점 이상이 가능한 시험이었다.  <b>6) 향후 시험을 위한 조언</b> ① 이번 시험도 기존에 기출 된 지문이 반복 출제가 주를 이루는 만큼, 기출 된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및 이해하고 기출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 몇 몇 오답유형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번 시험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출제영역이 조금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영역을 넓혀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신판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③ 조문(규칙 포함)과 판례(신판례 포함)의 유기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2편	5	수사기관, 피의자, 자문위원		
		수사의 조건(합정수사)		
		수사의 단서		3
		임의수사		
		기술적 수사(감청)		
		대인적 강제처분		
		체포·구속된 자 보호제도		
		대물적 강제처분		1
3편	3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		
		수사의 종결 및 재정신청		1
		공소제기의 방식		2
4편	17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시효		
		기초지식		
		소송의 주체		4
		심리범위 · 공소장변경		1
		공판진행(준비, 출석, 조사, 특칙)		6
		증거		3
5편	2	재판		3
		상소	2	
6편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즉결심판절차)		
종합	3	집행과 형사보상		
		종합형 문제	3	



**무료 해설강의 일정 및 기출문제집 출간안내**

<b>무료 해설강의</b>	2014년 4월 22일 화요일 16 : 20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b>2014년 개정판 기출문제집 출간</b>	1) 「선택과 집중」 기출 형사소송법(2014년판) 2) 2014년까지 시행된 모든 기출문제 반영 및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 2014년 경찰승진시험 반영 - 2014년 경찰간부시험 반영 - 2014년 법원직시험 반영 - 2014년 경찰1차시험 반영







③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전원합의체). 따라서 실제 판결을 하여야 한다.

7. 변호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이더라도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무단 퇴정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해설 ④

④ X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제282조, 제283조).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는 예외이다(제282조 단서).  
 ① O 제282조      ② O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915 판결      ③ O 대법원 1991.6. 28. 선고 91도865 판결

7.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 ①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②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 ③ 범죄 후의 범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을 개정할 수 없다.

해설 ④

④ X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을 개정하지 못한다(제276조). 그러나 면소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277조 제2호).  
 ① O 제331조      ② O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3532 판결      ③ O 제326조 제4호

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②



- ③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해설 ③

③ X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부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① O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② O 제217조 제1항      ④ O 제134조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기간은 공범 중 1인을 안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자를 알지 못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 ④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해설 ①

① X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 공범이 있다면 공범 중 1인을 알면 족하지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을 알아야 한다**.  
 ② O 대법원 1987.6.9. 선고 87도857 판결      ③ O 대법원 1999.2.9. 선고 98도2074 판결  
 ④ O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판결

12. 피해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 ①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수 있다.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 ④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①

① X 검찰항고권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피해자라 할지라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  
 ② O 제294의4 제1항      ③ O 제259의2      ④ O 제294의2 제1항

1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 ③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 ④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④

- ④ X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환형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9.13. 선고 77도2114 전원합의체 판결).
- ① O 제457조의2    ② O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③ O 대법원 1969.3.18. 선고 69도114 판결

13.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 ①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② 수회의 간통이 실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일부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간통사실에도 미친다.
- ③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은 비신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④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즉시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②

- ② X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 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8.26. 선고 80도1310 판결).
- ① O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7462 판결    ③ O 대법원 1964.12.15. 선고 64도481 판결
- ④ O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14.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학력·지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해설 ④

- ④ X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52 판결).
- ① O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 ② O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 ③ O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14.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②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 ㉠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에 기재된 내용
- ㉡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 ㉢ 일본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 분석의뢰서, 분석회답서등본
- ㉣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④

모두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판결      ㉡ 대법원 2004.01.16 선고 2003도5693 판결  
 ㉢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45 판결      ㉣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판결

16.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해설 ④

④ X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① O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② O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1052 판결  
 ③ O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나,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
- ② 유아의 증인능력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해설 ①

① X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규칙 §75①, §77).  
 ② O 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579 판결      ③ O 대법원 2010.1.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④ O 규칙 제75조 제2항

17.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4년 교정·보호 9급)

- ① 항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소는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 ② 결정과 명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 ③ 중국전 재판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된다.
- ④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그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여도 재판의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④

④ O 재판의 선고와 고지는 이미 성립한 재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여도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제301조 단서).

① X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② X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③ X 중국전 재판은 중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이므로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416조, 제415조).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가)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였다. 법원은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다.

(나) 위 제1회 공판기일의 인정신문 진행 중 공소제기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이 연기되었다. 그 후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별도의 공판절차회부 없이 이 공소장에 의하여 인정신문 등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 ① (가)에서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으므로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가)의 기록송부행위가 기록 송부시로 소급해서 공소제기의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가)의 기록송부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나)의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③

③ X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2735 판결).

①②④ O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2735 판결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14년 교정·보호 9급)



-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제2항).
- ㉡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61조 본문).
-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제202조). 그리고 구속기간의 계산에는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제66조 제1항).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30에 피의자 甲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우에는 2014년 2월 ( **24** )일 24:00 이내에 피의자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2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 ②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 이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해설 ③

- ③ X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5441 판결).
- ① O 옳은 설명이다.
- ② O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8.27. 89헌가118
- ④ O 대법원 2001.3.9. 선고 2001도192 판결

20.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 ① 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에 불과하므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 ②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거동불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③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흥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③

- ③ O 제211조 제2항 제4호
- ① X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② X 가족 또는 친지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5항).
- ④ X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3항). **흉기소지를 제외한 소지품검사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부정설과 긍정설(다수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계획	강의 장소	강의 일자
조문·판례 총정리	서울(노량진) 남부경찰	5월 3일부터 19시~22시 9주간
	대구 한국경찰학원	4월 15일부터 18시~22시 9주간
	대전 중앙경찰학원	4월 21일부터 22시까지 9주간
	부산 한겨레경찰학원	4월 30일부터 18시 30분~22시 9주간
기본강의	서울(노량진)남부경찰학원	형사소송법 기본강의 개강(6월 2일 개강)
출간안내	2014년판 선택과 집중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1) 출간 예정일 : 2014년 4월 중 2) 2014년 경찰승진·간부, 법원, 경찰, 국가직9급 모두 반영 3) 최근 8개년 전직렬 기출문제 완벽반영 및 상세한 해설